

공 시 송 달
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4월 5일
금융위원회

1.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	주 소
(주)나노트로닉스	134111-0002472	126-81-15594	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0 (암사동, 한일빌딩)

2. 서류의 명칭 :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 통보

3. 서류의 내용 :

1. 귀사의 제34기(2008.1.1.~2008.12.31.)부터 제39기 반기(2013.1.1.~2013.6.30.)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6조에 의한 조사·감리를 실시한 결과, 우리 위원회(2016.2.24.의결)는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 등에 의거 '불입'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·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한편,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* 이내에 행정심판(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(주)나노트로닉스에 대한 조치 1부. 끝.

(붙임)

㈜나노트로닉스에 대한 조치

증권선물위원회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㈜나노트로닉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□ ㈜나노트로닉스

- 대표이사 : 장성익
- 법인등록번호 : 134111-0002472
- 사업자등록번호 : 126-81-15594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20 (암사동, 한일빌딩)
(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66번길 44-6 장성익)
(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,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한진호)

2. 조치내용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 제1항, 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제26조 및 제48조,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
 - 과태료 50,000,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㈜나노트로닉스가 폐업으로 인한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최저수준인 100,000원을 부과한다.
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2항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,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
 - ㈜나노트로닉스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12월, 감사인지정 3년, 검찰고발(회사, 前 대표이사 한진호)하여야 하나, ㈜나노트로닉스가 상장폐지 및 폐업 등으로 인적·물적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고 前 대표이사 한진호가 이미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의 위반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조치하지 아니한다.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(주)나노트로닉스(이하 '회사')는 제34기(2008.1.1.~2008.12.31.)부터 제39기 반기(2013.1.1~2013.6.30.)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함

○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

- 회사는 미국 등 해외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회사가 동 페이퍼컴퍼니에 선로의 절단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측기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3.6월까지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

매출·매출원가 허위계상 금액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제34기 (‘08년)	제35기 (‘09년)	제36기 (‘10년)	제37기 (‘11년)	제38기 (‘12년)	제39기 (‘13년) 반기
매 출	2,782	4,011	7,800	9,982	11,909	3,073
매 출 원 가	836	2,281	4,423	6,764	5,513	1,723
당기순이익	1,945	1,730	3,377	3,218	6,396	1,350
자 기 자 본	1,945	3,675	7,052	10,270	16,665	18,016

○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

- 회사는 2012.7.12., 2013.8.30.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시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舊 「기업회계기준서」 제21호(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) 및 「기업회계기준서」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에 따르면

-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,

-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, 경영성과, 이익잉여금 처분(또는 결손금처리),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

□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제16조

-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의 업무를 하고,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, 직무정지, 주권상장법인 및 지정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,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권고,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0조, 159조, 제449조, 동법 시행령 제137조 및 제168조에 따르면

- 상장법인 등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공시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,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, 426조

-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,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-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,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